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159

제출년월일 : 2011. 9.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 [별표 2]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나.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다. 기본 ·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 · 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라.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강행규정으로 변경 (반영할 수 있다 ⇒ 반영하여야 한다)

마.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 개정조례안 : 불임

□ 신 · 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생략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1. 7. 8.(화) ~ 8. 5.(금)
- 사전심의(결과) : 원안가결
 - 인사위원회 심의 : 2011. 8. 31.(수)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
 - 개정 조례안(전문)
 - 현행 조례(전문)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 (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 할 수 있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권오달
	담당·계장 직위·성명	인사계장 박부옥
	담당자 성명·전화	김유성 (행정 3107)

[별표1]

지방별정직 공무원(제2조의2 관련)

1. 비서요원
2. 보건(식품) 위생관리원
3. 공기업회계요원
4. 홍보(안내)요원
5. V.T.R요원
6. 재산(물품) 관리원
7. 화생방요원
8. 직업훈련교사(교관)
9. 사회복지전문요원
10. 청사(건물) 유지관리원
11. 상하수도 수질관리원
12. 산림보호관리원
13. 그밖의 특수분야 공무원

[별표2]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3급상당 이상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 (별정직공무원)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무원은 <u>별표와 같다.</u>	제2조의2 (별정직공무원) ----- ----- ----- 별표 1과 -----
제4조 (임용자격)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 신설 ></u>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 ----- ----- ----- ----- ----- <u>반영할 수 있다.</u>	<p>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p>
<u>< 신 설 ></u> 제12조 (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p>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 ----- ----- ----- <u>반영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지방별정직 공무원(제2조의2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요원 2. 부녀상담원 및 부녀행정요원 3. 아동복지지도원 4. 문화재연구원 5. 향토자료실 운영요원 6. 홍보요원 7. V.T.R요원 8. 조경전문요원 9. 영선관리요원 10. 의료보험 전담요원 11. 항측관리요원 12. 화생방 전담요원 13. 근로청소년 상담요원 14. 교양교육관요원 및 취미교육관요원 15. 조리사요원 16. 문서관리 필름화요원 17. 사회복지전문요원 18. 기록요원 19. 그밖의 특수분야 공무원 <p>< 신설 ></p>	<p>[별표1]</p> <p>지방별정직 공무원(제2조의2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서요원 2. 보건(식품) 위생관리원 3. 공기업회계요원 4. 홍보(안내) 요원 5. V.T.R요원 6. 재산(물품) 관리원 7. 화생방요원 8. 직업훈련교사(교관) 9. 사회복지전문요원 10. 청사(건물) 유지관리원 11. 상하수도 수질관리원 12. 산림보호관리원 13. 그밖의 특수분야 공무원 <p>[별표2]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4조제3항 관련) [붙임 참조]</p>

[붙임]**[별표 2]****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자격
3급상당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